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607호
- 나. 제 안 자 : 권영희 의원 외 10명
- 다. 제안일자 : 2020년 5월 25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세계도시 간 투자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유치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및 투자유치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아울러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서비스업 투자유치에 강점이 있는 서울의 투자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외국인투자 촉진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나.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의2)
- 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의2)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전문기관, 투자유치단의 운영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시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 외국인투자¹⁾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이전해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되어 전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은 2015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신고기준)이 2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1) 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외국인투자는 '직접투자'와 이자수익, 배당을 목적으로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로 구분되며, 이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함.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기업이 신주 발행으로 외국인투자 자금을 조달하거나 장기차관으로 구입해 신규시설을 건설하는 신설형(Greenfield)과 신규 시설 건설 없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 이 취득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이 있음.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단위 : 건, 백만달러, %)

연도	신고기준			도착기준		
	건수	금액	증감 (전년비)	건수	금액	증감 (전년비)
2015	2,697	20,910	10.1	1,739	16,598	34.5
2016	2,687	21,296	1.8	1,826	10,803	△34.9
2017	2,774	22,948	7.7	1,694	13,750	27.3
2018	2,669	26,901	17.2	1,710	17,263	25.5
2019	2,674	23,328	△13.3	1,668	12,912	△25.2

- 서울시는 2019년에 역대 최고치인 101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 위주인 비수도권과 달리 서비스업 위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수합병(M&A) 방식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음.

<최근 5년간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신고기준)>

(금액단위 : 백만달러)

연도	전체		M&A형 (기존주식 취득 등)		Greenfield형			
					공장형(제조업)		사업장형(비제조업)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2019년	1,291	10,083	116	3,451	106	880	1,069	5,752
2018년	1,325	8,952	165	3,107	26	147	1,134	5,698
2017년	1,231	6,835	166	2,746	15	91	1,050	3,998
2016년	1,493	9,558	180	4,082	24	413	1,289	5,063
2015년	1,311	8,529	164	4,517	13	139	1,134	3,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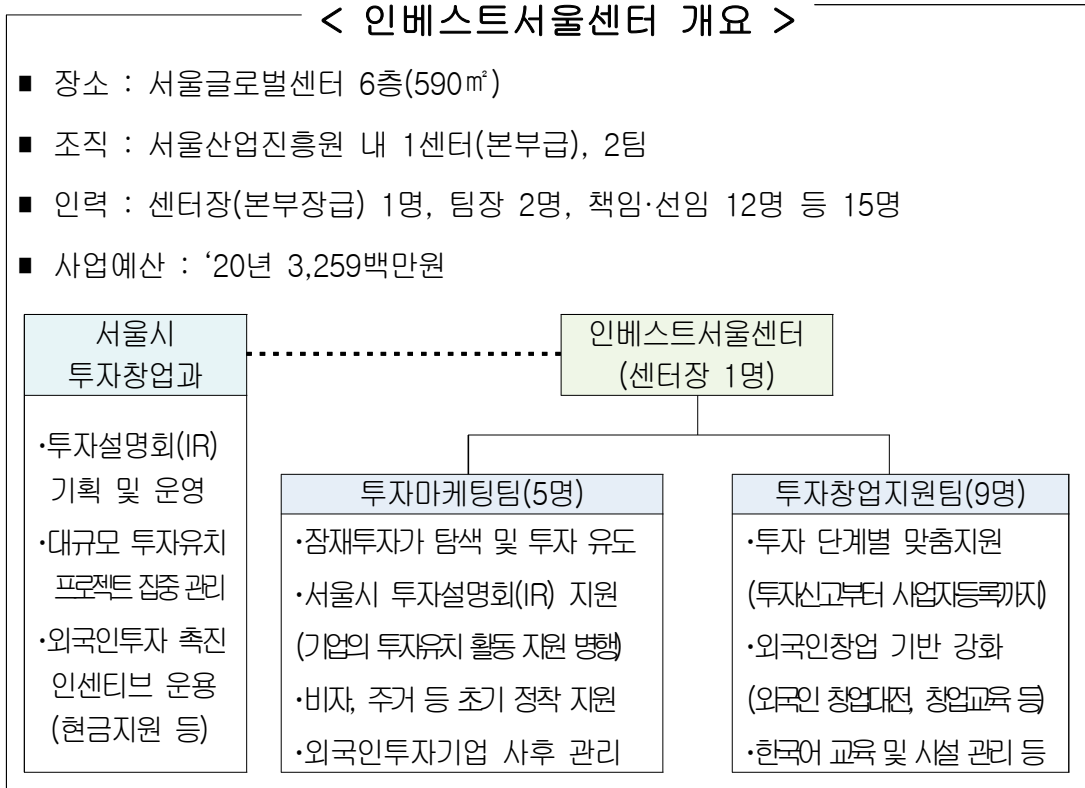
다. 투자유치 전문기관(안 제6조 제2항, 신설)

- 안 제6조 제2항은 서울시의 외국인투자유치 기반 강화와 역량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전문기관에 외국인투자 촉진기구를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²⁾는 지방의 산업단지과 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서비스업이 강세인 서울시의 투자유치 환경에는 한계가 많음.
- 이에 서울시는 서비스업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 연관 산업 14개 업종을 투자유치 타깃사업으로 설정하고, 아시아(홍콩·싱가포르 등), 오세아니아 등으로 투자유치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인베스트서울센터를 금년 2월에 개관하였음.

<신산업 14개 업종>		
① 화공(화장품 등)	⑥ 전기전자(반도체 등)	⑪ 금융보험
② 의약(의료용품 등)	⑦ 운송용 기계(항공 등)	⑫ 사업지원·임대
③ 비금속(광물 제조 등)	⑧ 도·소매(전자상거래 등)	⑬ 연구개발
④ 금속(금속 가공제품)	⑨ 운수·창고(스마트 물류)	⑭ 여가·스포츠·오락
⑤ 기계장비·의료정밀	⑩ 정보통신	

2) 인베스트 코리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해외에 홍보하고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부터 국내사업활동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베스트서울센터는 현재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 투자자 발굴, 기업활동 지원 등 전 투자영역에 걸쳐 해당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독자적 기구의 설치와 운영이 필수적임.
- 특히, 경쟁도시인 홍콩과 싱가포르 등은 이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 도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베스트서울센터의 운영과 전문기관의 위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투자유치단 운영(안 제6조의2, 신설)

- 안 제6조의2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 서울시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하고,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 101억달러 달성을 기점으로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를 발굴해 투자유치를 확대할 계획임(2020년 120억 달러).
- 하지만, 그 동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자를 발굴해 온 관계로 관련 경험과 독자적인 해외 네트워크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민간전문가를 투자유치 요원으로 위촉해 해외 현지 투자설명회에 참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홍보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유망 투자자를 집중 발굴할 계획임.
- 서울시의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투자유치단은 총 20명이며 잠재 투자자 발굴 역량이 있는 선임단원 10명,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실무단원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임.

< 투자유치단 구성 계획 >

- 국내·외 민간 전문가를 투자유치 요원으로 위촉, 市 거버넌스로 구축
- ※ 市는 투자유치 요원이 발굴한 프로젝트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진행
- 총 20명 위촉으로 서울의 외국인투자 발굴력 확대(선임 10명, 실무 10명)

선임 단원(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력 언론 매체 고위급 관계자 ○ 저작권·특허권 관련 전문 북미 변호사 및 교수 ○ 對서울 투자 의향이 있는 글로벌 VC·AC 대표 등
실무 단원(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외국인투자 민간 전문가 ○ 코트라 등 외국인투자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 등 ○ 외국환 취급 은행 관계자

- 임기는 성과와 활동 정도에 따라 수시로 위촉·해임 진행
- 잠재 외국인투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적극 지원으로 성과창출 독려

- 개정안은 투자자문단원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글로벌 투자유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산업 육성 방향에 부합하는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한 입법 조치라 보임.

마.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지원(안 제9조의2, 신설)

- 안 제9조의2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 지역(연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입지지원, 재정지원,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 유형		지원내용	지원요건
입지 지원	시유지 매각	시유지 조성원가에 수의매각 → 마곡 산업단지 미매각 부지 등	①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② 5년 간 외국인투자 비율 유지 ③ (매각) 산업단지 (임대) 市 지식산업센터 등
	시유건물 임대	시중가 대비 60% 수준 임대 → DMC 지식산업센터 등	
재정 지원	현금지원	토지 매입, 건물 임대, 고용 보조 → 투자금액의 최대 30%	①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② 연구개발 등 양질의 FDI 한정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	건물 임대 보조 → 건물 임대료의 최대 50%	①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② 연구개발 등 양질의 FDI 한정 ③ 5명 이상 고용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고용·교육훈련 보조 → 1인당 최대 6백만원 지원(6개월간) ※ 기업당 한도 2억원	①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② 10명 이상 신규 고용
조세 감면	지방세 감면 ※ 국세 감면은 폐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10년 간 100%, 5년 간 50%	① 외국인투자 1억원 이상 ② 기재부 '신성장동력산업' 심의

- 서울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현금지원, 건물임대료 보조,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자 재정지원 사업 추진 현황>

유형	현금지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대상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외국기업 소재·부품 관련 외국기업 대규모 고용창출 외국기업 R&D센터 설립 외국기업 지역본부 설립 외국기업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지식서비스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서울시와 MOU 체결기업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외국기업
지원 요건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전년도 대비 10명 초과 고용
지원 내용	해당 투자기업의 토사·건물 매입·임대료, 기자재 구입비, 고용보조금 등	입주 투자기업의 건물 임대료 감면(최대 5년)	10명 초과 고용인원 당 최대 6백만원 ※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

市예산 (‘20년)	4억 9,500만원 (캐나다 스캔라인VFX)	2억 3,900만원 (에이바이오텍 등 3개사)	2억 2,500백만원 (공모로 선정 예정)
매칭 비율	고용보조금만 국50:시50 나머지는 국30:시70	국30:시70	시비 100%
지정자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	서울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근거 규정	외국인투자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조례 제14조 ³⁾	외국인투자법 제18조 제1 항	외국인투자법 제14조 제4항, 외국인투자조례 제15조제6조 ⁴⁾

○ 하지만,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임대료 지원의 경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는 2016년에 도입되었으나 그간 서울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못했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시·도지사가 산업자원통상부의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지역에 입주한 연구개발업, 금융업 등 고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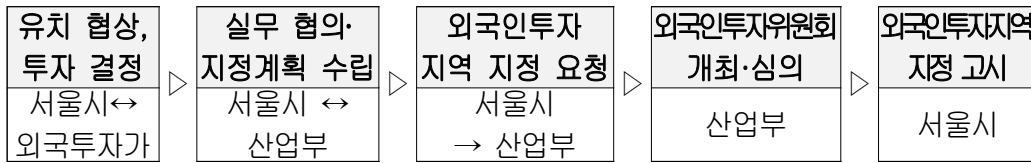
3)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4조(현금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의 수반여부, 기술이전의 효과, 고용창출의 규모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5조(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 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 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개요 >

- ▶ 도입목적 : 지식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 ▶ 지정권자 : 시·도지사(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승인)
- ▶ 지정요건 : 고부가 서비스업종, 외투금액 1억원 이상, 외투비율 30% 이상
 - (업종) 연구개발업, 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산업
 - (고용인원) 연구개발업은 연구인력 5인 이상,
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산업 각 15인 이상
- ▶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 지원내용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건물 임대료 지원
 - 최대 5년 간, 건물 임대료의 최대 50% 지원(다음 년도 사후정산으로 지원)
- ▶ 사업 흐름도



- 서울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총 2개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였고, 3개의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음.

<서비스형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지원기업명 (외국투자가)	입주지역	주요사업	지원기간	총 지원액 (시비70%+국비 30%)
인튜이티브 서지컬 (인튜이티브 서지컬, 미국)	DMC첨단 산업센터 (301~309호)	로봇수술 트레이닝 센터 설립·운영 100억원 투자	'17년~'22년	369,405 (258,585+110,820)
에이바이오텍 (토모이케 인더스트리얼, 홍콩)	DMC산학 협력연구센터 (1305호)	항체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센터 설립·운영 5억원 투자	'19년~'23년	134,245 (93,970+40,275)

보잉한국기술 연구센터 (보잉 T&FS, 영국)	강남아셈타워 (2501호)	최첨단 항공우주연구 센터 설립·운영 48억원 투자	'20년~'24년	1,298,690 (909,083+389,607)
------------------------------------	-------------------	-----------------------------------	-----------	--------------------------------

- 안 제9조의2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실시되었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 지원을 조례상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바. 종합의견

-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전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19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단위 : 10억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잠정치)	
	규모	증감	규모	증감	규모	증감	규모	증감
전세계	1,919	△6%	1,497	△22%	1,413	△6%	1,394	△1%
선진국	1,198	△6%	759	△37%	683	△10%	643	△6%
개발 도상국	656	△10%	691	5%	696	1%	695	0%
전환 경제국	65	78%	48	△26%	32	△34%	57	65%

- 또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미·중간 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위축되고 있어 향후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해 서울시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려면 외국인투자자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구비하고 행정 지원 서비스, 투자인센티브 등 사업편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인베스트서울센터, 외국인 투자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단,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개선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의 외국인투자유치 담당 조직의 축소⁵⁾ 등 행정지원 인프라는 취약해지고 있어 자체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역량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2180-8055

5)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종전 외국인투자유치과가 통·폐합되어 현재 투자창업과의 2개 팀 (투자유치1팀·투자유치2팀)으로 축소되었음.

[참고자료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